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81
----------	-----

발의연월일 : 2024. 6. 14.

발 의 자 : 정희용 · 김종양 · 김선교
우재준 · 강대식 · 강승규
김승수 · 신성범 · 송언석
김은혜 · 유상범 · 김예지
주호영 · 이철규 · 조지연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청각장애인은 청각 장애 이외에도 한글 이해력이 다소 부족한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만 만들어진 선거공보물로는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치 비전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그 내용이 수어영상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경우 청각장애인이 후보자의 공약과 정치 비전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이에, 모든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그 내용이 수어영상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2항 후단 신설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에는 그 내용이 수어영상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22조의2제3항제2호 중 “제65조에 따른”을 “제6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수어영상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의 표시비용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61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6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수어영상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책자형 선거공보의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임기만

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부터 적용한다.

다.

1. (생략)

2. 제65조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보(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후보자가 제출하는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성비용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및 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및 전단형 선거공보의 발송비용과 우편요금

3. ~ 7. (생략)

④ · ⑤ (생략)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략)

<신설>

-----.

1. (현행과 같음)

2. 제6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수어영상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의 표시비용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3. ~ 7.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2. (현행과 같음)

2의2. 제65조제2항 후단을 위반

<p>3. ~ 5. (생 략) ④ ~ ⑫ (생 략)</p>	<p><u>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수어영상으로 출력되 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한 자</u></p> <p>3. ~ 5. (현행과 같음) ④ ~ ⑫ (현행과 같음)</p>
--------------------------------------	---